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 의 장
람	

제1505호 2020. 4. 6(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63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6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주차장, 녹지, 공공공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6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65호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고시 ----- 9
- 인천광역시서구 보건소 고시 제2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안) ----- 11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588호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신청 보완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 공람·공고 ----- 1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591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 1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592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8
- 인천광역시서구 보건소 공고 제3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 23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0-63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4. 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검단로 147 외 20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04.06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0-04-06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55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147 (오류동)	20090710	검단이가 검단으로 변천한 것으로 옛 지명 부여 및 검단신도시 중심을 가로 지르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34-75	인천광역시 서구 두루물로 68 (오류동)	20090922	두루물로라는 옛 자연마을의 이름 반영	
3	인천광역시 서구 미천동 산120-4	인천광역시 서구 미천로 172-30 (미천동)	20081231	미천이라는 법정동 명칭을 이용하여 명명	
4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0	인천광역시 서구 소담1로 40 (금곡동)	20191223	소담로에서 첫 번째 분기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0	인천광역시 서구 소담2로 14 (금곡동)	20191223	소담로에서 두 번째 분기되는 도로	
6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43-11	인천광역시 서구 가재울로32번길 33 (가좌동)	20090706	가재울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890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153번길 25-14 (석남동)	20090922	건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531-1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로10번길 6 (검암동)	20090922	검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10-11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839번길 27 (원당동)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3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10-11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839번길 29 (원당동)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3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10-11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839번길 31 (원당동)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3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10-11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839번길 33 (원당동)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3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3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10-11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839번길 35 (원당동)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3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4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10-11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839번길 37 (원당동)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3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5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10-11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839번길 39 (원당동)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3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6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10-11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839번길 35-1 (원당동)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3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7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734-5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153번길 29-7 (오류동)	20090922	단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8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6-3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100번길 8-16 (청라동)	20110630	경관특성화계획에 의해 사파이어존의 창색에서 착안. 창색의 네번째 도로로 부여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조서

고시일 : 2020-04-06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1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207-5	인천광역시 서구 중동대로412번길 53 (청라동)	인천광역시 서구 파랑로 437 (청라동)	소유자 신청	20090922	옛날 청라도가 파란으로 불려, 이 명칭을 따 파랑로로 명명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고시일 : 2020-04-06

원번	도로명주소	폐지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120번길 28-3 (원창동)	건물 멸실	20090922	북항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205번길 16 (오류동)	건물 멸실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0-6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주차장, 녹지, 공공공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주차장, 녹지, 공공공지)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구청(도시개발과, 032)560-476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0. 4. 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기반시설(도로, 주차장, 녹지, 공공공지) 변경에 관한 계획

2.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03-12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주차장, 녹지,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최 초 결정일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27	8	국지	380	중로1-54	소로2-30				
변경	소로	2	27	8	국지	380	중로1-54	소로2-30				면적 감소
기정	소로	2	30	8	국지	803	중로1-54	중로1-27	경고 제53호 (1977.3.11.)			
변경	소로	2	30	8	국지	415	소로2-27	중로1-27				
기정	소로	2	B	8	국지	29	소로2-30	소로2-27				
변경	소로	1	323	10	국지	54	석남동 203-13	소로2-27				
신설	소로	1	324	10~12	국지	129	소로1-323	중로1-54				

■ 주차장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주차장	서구 석남동 산118-3 일원	4,613	-	4,613	서고 제2012-25호 (2012.4.23)	지하주차장
변경	주차장	서구 석남동 203-13 일원					

■ 녹지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녹지	완충녹지	서구 원창, 석남, 신현동	238,503	감) 1,463	237,040	건설부고시 제54호 (1970.2.9.)	-

■ 공공공지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공공지	공공공지	서구 석남동 산119-13 일원	-	증) 1,755	1,755	-	-

○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주차장, 녹지,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2-27	소로2-27	• 면적 감소 -3,064m→3,055m(감9㎡)	•소로2-30 연장축소에 따른 소로2-27의 가각구간 제척으로 면적 감소
소로2-30	소로2-30	• 연장 축소 -폭원:8m -연장:803m→415m(감388m)	•지형적 요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선 연장 축소 ⇒ 공공공지 신설
소로2-B	소로1-323	• 연장 및 폭원 증가 -폭원: 8m→10m -연장: 29m →54m(증 25m)	•상생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복합커뮤니티센터) 연계 추진에 따른 주차장 접근도로의 연장 및 폭원 확장
-	소로1-324	• 노선신설 -폭원: 10m~12m, 연장: 129m	•상생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복합커뮤니티센터) 연계 추진에 따른 노선 신설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주차장	▶ 변경 -위치 : 서구 석남동 산118-3번지 일원 → 서구 석남동 203-13번지 일원	•상생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계획 반영

■ 녹지 변경사유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완충녹지	▶ 변경 - 위치: 서구 원창, 석남, 신현동 - 면적: 238,503㎡ → 237,040㎡ 감) 1,463㎡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에 따른 녹지기능 저하구간 완충녹지 해제 •도시계획도로(소로1-323, -324) 계획 변경에 따른 녹지 면적 감소

■ 공공공지 변경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공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 신설 - 면적: 1,7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소로2-30호선) 해제 구간에 주민의 휴식과 여가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공지 신설

4. 지형도면: 게재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 서구고시 제2020-65호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0-11호(2020.1.13.)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시설 : 녹지】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개발과, ☎032-560-4762)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20. 4. 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213-6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적 : 228m²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주식회사 정원도시개발 대표이사 박정서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268(왕길동)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 ~ 2020.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m ²)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1	원창동	213-61	대	137	137	(주)정원 도시개발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268 (왕길동)	-	-	-
2	원창동	219-6	잡	91	91	기획 재정부	-	-	-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고시 제 2020 - 2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안)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0. 4. 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지정취지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지정내용

- 지정일 : 2020년 4월 6일
- 지정대상 및 범위(붙임 참조)

구 분	현 황	기 지정	추가 지정	비 고
도시공원	138개소	137개소	1개소	※ 추가 지정 대상은 금연안내표지판 설치

※ 건강증진과-6547(2016.03.30.)호에 의거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주유소의 신설·변경 시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되며 흡연단속(과태료 부과) 실시함

3.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

- 단속개시일 : 2020년 7월 6일부터
- 과태료 부과금액 : 5만원

4. **고시방법** : 구보, 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2-560-5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금연구역 지정 현황]

○ 서구 관내 도시공원 지정 : 1개소

연번	구분	공원명	주소	면적(㎡)
1	도시공원	현무체육공원	인천 서구 마전동 774번지 일원	17,779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588호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신청 보완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 공람·공고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7차) 및 실시계획(변경, 4차)과 관련하여 「도시개발법」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4. 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 가. 명 칭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변경없음)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71번지 일원(변경없음)
 다. 면 적

구분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933,916	감) 27,567	906,349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구역내 경인고속도로 제척 및 구역 경계의 예정지적좌표 결정(변경)에 따라 구역면적 변경

- 라. 시행기간 : 2006. 8. 28. ~ 2020. 12. 31.(변경없음)
 마. 주요내용

○ 인구수용계획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용적률 (%)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295,112	292,038	100.0	9,521	23,993	-	
공동주택	73,462	70,388	24.1	2,037	5,133	220 ~ 280	
60m ² 이하	25,035	24,129	8.3	831	2,094	220 ~ 280	
60 ~ 85m ² 이하	48,427	46,259	15.8	1,206	3,039	280	
85m ² 초과	-	-	-	-	-	-	
주상복합 ¹⁾	221,650	221,650	75.9	7,484	18,860	420 (주거:90%미만)	

○ 토지이용계획

구 분	기정		변경		증감
	면적(m ²)	구성비(%)	면적(m ²)	구성비(%)	
합 계	933,916	100.0	906,349	100.0	감) 27,567
주 거 용 지	93,204	10.0	89,314	9.9	감) 3,890
공동주택용지	73,462	7.9	70,388	7.8	감) 3,074
준주거시설용지	19,742	2.1	18,926	2.1	감) 816
상 업 용 지	387,010	41.4	380,564	42.0	감) 6,446
중심상업용지	80,550	8.6	80,550	8.9	
일반상업용지	306,460	32.8	300,014	33.1	감) 6,446
주상복합용지	221,650	23.7	221,650	24.5	
상업업무용지	56,465	6.0	51,250	5.7	감) 5,215
공공복합용지	28,345	3.0	27,114	3.0	감) 1,231
도 시 기 반 시 설 용 지	451,477	48.3	434,246	47.9	감) 17,231
도 로	287,262	30.7	270,165	29.8	감) 17,097
공 원 · 녹 지	144,317	15.5	143,509	15.8	감) 808
근린공원	52,258	6.6	47,575	5.2	감) 4,683
어린이공원	12,571	1.3	16,129	1.8	감) 3,558
소공원	14,883	1.6	9,881	1.1	증) 5,002
문화공원	21,571	1.3	21,734	2.4	
경관녹지	38,691	4.1	44,036	4.9	증) 5,345
완충녹지	4,180	0.4	4,154	0.5	감) 26
전기공급설비	2,636	0.3	2,690	0.3	증) 54
가스공급설비	-	-	50	0.0	증) 50
주차장	6,239	0.7	6,230	0.7	감) 9
학교	-	-	1,389	0.2	증) 1,389
유치원	2,507	0.3	1,697	0.2	감) 810
광장	3,816	0.4	3,816	0.4	
공공청사	4,700	0.5	4,700	0.5	
기 타 시 설 용 지	2,225	0.2	2,225	0.2	
종교용지	811	0.1	811	0.1	
주유소	1,414	0.2	1,414	0.2	

2. 시행자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 가. 시행자 : 인천광역시청,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변경없음)
- 나. 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변경없음)

3. 공람기간,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방법

-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 나.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청 도시개발계획과(☎440-4512)
 인천광역시서구청 미래기획단(☎560-5903)
 가정1동 /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560-3047 / 3068)
- 다. 의견제출 방법 : 공람기간 내 의견서(서면) 제출

4. 기타

- 「도시개발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내용(도면포함)은 지면관계상 생략하고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제2020-591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1항 위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22조(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따른 운행정지명령대상 차량으로 확인되었기에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4. 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 고 기 간 : 2020. 4. 6. ~ 2020. 4. 20.(15일간)

2. 공 고 내 용

1. 행정처분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2. 대상차량	등록번호	55로4977 외 18건(붙임 참조)		
	차 명			
3. 운행정지 사유	소유자의 요청 등			
4.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5. 관할관청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담당부서	차량민원과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 032-560-5747, FAX 032-560-2793)		

3. 유 의 사 항

-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2)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3)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이 가능하며 말소 등록된 자동차(무등록 자동차)를 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4)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서구청 차량민원과 차량관리팀(☎ 032-560-57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

연번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명	운행정지명령 등록일	비고
1	55로4977	이*호	2020.03.03	
2	69마6435	김*영	2020.03.05	
3	82라7098	이*미	2020.03.10	
4	13러6144	㈜**강재	2020.03.10	
5	39모9739	신*호	2020.03.11	
6	인천73노7587	송*남	2020.03.12	
7	서울82루9478	이*성	2020.03.16	
8	서울46고2001	이*성	2020.03.16	
9	15주7566	김*화	2020.03.16	
10	55너6253	나*균	2020.03.17	
11	90루5486	조*삼	2020.03.23	
12	85주8780	이*미	2020.03.23	
13	89어2981	이*미	2020.03.23	
14	경기38마5634	주*환	2020.03.24	
15	31조7975	정*환	2020.03.25	
16	17버0438	박*자	2020.03.29	
17	27루6886	이*일	2020.03.30	
18	89우2972	노*호	2020.03.30	
19	50마0210	유*심	2020.03.31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 - 592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4. 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2.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 제정을 위해 해당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제1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 조문 신설 (안 제6조의2)
 - 신설 :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0년 4월 22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팩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560-4205 / FAX 560-2722]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각 1부.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 개정을 위해 해당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제1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나.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 조문 신설 (안 제6조의2)

- 신설 :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별지 참조”

나. 예산 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신·구조문 대비표 : “별지 참조”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또는 제00차 규제개혁위원회(. . .)와 심의 결과, 별첨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6조의2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 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 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u>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공고 제 2020 - 3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0. 4. 6.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장

1. 지정취지

공동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아파트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지정내용

- 공동주택 명 칭 : 한양수자인레이크블루아파트
- 공동주택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대로 132 (청라동)
- 금연구역 지정번호 : 제31호
- 금연구역 지정범위(전체)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금연구역 지정일자 : 2020년 4월 6일

3.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

- 단속 개시일 : 2020년 7월 6일부터
- 과태료 금액 : 5만원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2-560-5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